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<b>자치법규명</b>	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		
<b>평가담당</b>	부서 : 감사담당관    직급 : 행정7급    성명 : 정지연		
<b>입안주무부서</b>	재무과	<b>통보(조치)일</b>	2015. 4. 27.
<b>관련조문</b>	<b>검토결과</b>	<b>조치사항</b>	
	원안동의		

□ 기타의견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」 中

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① 기금은 <b>구청장</b> 이 운용·관리한다.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③ 기금의 용자는 무이자로 한다. 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① 기금은 <b>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b> 이 운용·관리한다.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③ 기금의 용자는 무이자로 한다. 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<b>합리적인 운용에 관한</b>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	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<b>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</b>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

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어느 한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	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어느 한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(이하생략)</p>
---	---